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0. 11. 13.
- 발 의 자 : 조영순 의원외 3명
- 검토일자 : 2020. 11. 18.

2.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 「주택법」 제2조
- 「건축법」 제11조

3.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과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을 위한 여러 시책 등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사료됨.